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8월 26일 (수) · 주간제 35호 · 통권 제 1481호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8/ 26 통권 148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시장조사엔 돈을 아끼지 말라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경영관리임직원 째경견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임원퇴직금 계산과 세무상 퇴직소득 인정범위 변동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모바일앱 이용 가능
- 올해 8월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CMO·마케팅 Tax consulting 퍽션

- 부가세 면세인 포장김치운반을 위한 비닐파우치도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제 됨 (p.12)

< 사업가의 사면초가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과세와 차등배당에 종소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개정안 >

2020년 세법개정안 : 중산층 재산가와 법인사업경영자 모두의 적법절세방안을 없앰.

사업소득, 법인이익의 처리방법론	세금계산방법, 최고세율 등	비교 · 효과, 적용시점
① 경영자 급여, 성과급 지급	법인수익의 대응비용, 6%~42%의 근로소득세율	2021년부터 10억 초과 45%임
② 경영자 급여 초과이익의 과세	법인이익의 세율(2억원까지는 10%, 초과액 20%~25%)	2020년까지는, 개인 최고세율 42% 보다 낮은 10%, 20%로 장기간 유보 가능
③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과세	초과유보소득 × 지분비율(80% 이상) × 14% 원천징수	2021년부터 시행 (배당 간주후 대주주 개인종합소득과세)
④ 대주주 자녀 차등배당(단일과세(2020년까지)에서 종소세 · 증여세 이중과세로 전환)	차등초과배당금에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 하나만 과세	2020년까지는 단일과세
	초과배당금에 대주주 종합소득세 과세한 후 세후 순금액에 대해 증여세도 부과	2021년부터는 소득세, 증여세 이중과세(총세율 75% 정도)
⑤ 법인이 대주주 지분의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취득후 보유상태 : 주식양도소득세(20% 등)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감자 : 차액은 배당소득과세	자기주식은 타인에게 처분 예정 주식 취득후 감자 · 소각
⑥ 가족간의 지분양수도	기업가치 적정평가 후 양도 : 중소기업 20%	자녀자금 → 대주주 부모에게 역방향 귀속됨
⑦ 가족간 지분 일반증여	기업가치 적정평가 후 증여 : 세율 10~50%	30억 초과시 50% 세율
⑧ 가업기업지분증여	(35억~5억) × 10% 적용, 초과 100억까지 20%	일반증여는 10%~50% 적용
⑨ 경영자 사망시 가업상속	기업가치 평가액 - (200억~500억 공제) 후 순금액에 상속세율 적용	일반상속이면 전액 × (10~50%) 적용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1 호 / 주간 35호

2020. 8. 26.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 FAX : 02) 718-8565

목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 010) 5255-6116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족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전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사업가의 사면초가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과세와 차등배당에 종소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개정안	표지
긴급 시사해설	임원퇴직금 계산과 세무상 퇴직소득 인정범위 변동	2
C E O 에세이	시장조사엔 돈을 아끼지 말라	3
세무·회계 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연을 위한 부품장착과 관련된 소모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임- 산업단지내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25% 경감됨- 정상적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신규사업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여야 함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7
매일 절세무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제혜택 제한 방안-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9 10
직장인 Survival	시간관리의 핵심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2281, 2019.12.26)-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기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183, 2020.02.28)	12 13
세정뉴스와해설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250만원 까진 비과세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부가세 면세인 포장김치운반을 위한 비닐파우치도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제 됨	12
세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모바일앱 이용 가능- 올해 8월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15 33 36
회계정보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3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임원퇴직금 계산과 세무상 퇴직소득 인정범위 변동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일반급여 :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임 → 여기에 퇴직금 일부가 합산되면 높은세율 적용
2. 퇴직급여 : 근속기간 누적된 소득으로 연분연승법 적용(총 퇴직금액 ÷ 근로기간으로 나누므로 낮은세율 적용)
3. 일반적인 경우 퇴직시 지급되는 별도 금액이나 전별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이 유리함.
4. 세법상 퇴직금으로 분류되는 범위 축소 변경중
 - ① 2011년까지는 1년당 퇴직금 지급 배수율의 규제 없었음(창업자의 경우 5배수 등)
 - ②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급배수비율을 3으로 축소(연당 3배수 초과분은 근로소득 상여 합산)
 - ③ 2020년부터는 기존의 3배수에서 2배수로 인하 규정함.
5. 예시 :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만 30년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인정금액 계산
 - ① 최근 3년간 평균연봉급여 × (최근 2년 × 2배수 + 최근 8년 × 3배수 + 과거 20년 × 5배수) × $\frac{1}{10}$
 - ② 예를 들어 퇴직연도까지의 3년 평균연봉 1.5억원 × $\frac{1}{10} \times (2 \times 2 + 8 \times 3 + 20 \times 5) = 19.2$ 억원
 - ③ 만약 20억원이 지급되었다면 20억 - 19.2억원 = 초과액 8천만원은 퇴직연도의 상여금 근로소득으로 분류합산됨.
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총액 - 근속연수별 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text{연환산}) = \text{환산급여} - \text{환산급여공제} (100\% \sim 35\%) = \text{퇴직소득과세표준}$$

$$(\text{퇴직소득과세표준} \times \text{다단계누진세율}) \div 12 \times \text{실제근속연수} = \text{퇴직소득산출세액}$$

시장조사엔 돈을 아끼지 말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출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 (Fila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시장조사를 하는데 쓰는 비용에 인색하다. 창업자들의 감으로 경영을 해 온 관행 탓이다. 물자가 귀하여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절에는 사실상 감조차 필요치 않았다. 우격다짐으로라도 불도저식으로 밀어 부쳐 생산하기만 하면 되는 경영관행에 오래 간 젖어 왔다. 그러니 그러한 오너에게 시장조사니 과학적 경영이니 하면서 비용을 쓰자고 용기를 낼 월급쟁이가 존재하기 쉽지 않다. 시장조사 비용이나 고객의 마음을 읽어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너 눈에는 쓸데없는 비용으로 비치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 월급쟁이에게 만용에 가까운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한푼이라도 더 있으면 시장조사보다 광고를 해대거나 접대비를 쓰기 바쁜 판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고 고객의 입맛이 까다로워 졌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재빨리 알아내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첫째, 포커스그룹운영이다. 소비자 대표를 선정해서 그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고객의 입맛을 읽어 낸다. 이것이 포커스그룹인터뷰라고 하는 시장조사 기법이다. 한때 미국대통령선거전에서 클린턴의 진영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투표자의 구미에 맞춰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공약을 터트림으로써 선거전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마케팅 조사기법이기도 하다.

이 기법은 제품의 개념이나 아이디어 또는 정책을 미리 일정고객의 대표에게 주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 접수를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Fila는 모두 자기 지역에 알맞는 포커스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나뉘어 운영된다.

흑인과 백인, 아시아계와 남미계등 인종과 계층별로 5, 6개의 포커스 그룹도 운영한다. 계

층에 따라 취향의 차이가 많다. 심지어 흑인 빈민을 위한 포커스 그룹도 있다. 빈민들이 무슨 돈으로 제품을 사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부복지기금으로 살아가는 빈민들은 내일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 그들은 복지기금을 받는 그날 자기가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까하지만 그런 소비성향을 겨냥해서 별도의 대책도 세운다.

미국 내 소비재 사업은 대부분 빈민들의 소비 성향을 노리는 게 현실이다. 둘째,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하여 포커스그룹운영과 별도로 디자이너들의 현장체험을 중시한다.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디자이너들은 철마다 두 번씩 매장에 나가 직접 판매를 해보도록 하고 있다. 고객들과 마주치면서 그들의 취향을 몸소 체득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 후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셋째, Fila는 대리점 사장들에게도 일정한 과업을 준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불만이 있으며,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은지에 대해 항상 본부와 커뮤니케이션 해달라는 의미에서다.

넷째,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스토어의 운영이다. 운영스토어 운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첫째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유효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에는 나이키 타운이 있다. 외국인들이 오면 꼭 들려 보는 관광명소인데, 이곳이 바로 나이키 직영점이다. 나이키는 여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운영스토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번째 이점은 고객 취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테스트다. 말하자면 “안테나스토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스토어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거기서 고객과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또 제품개발에 직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고객의 취향을 알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투자를 한다. 그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번영하는 열쇠이며 현대경영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시연을 위한 부품장착과 관련된 소모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임

Q

자동차 전자 부품업체로 고객사의 시연을 위하여 테스트 차량을 리스하여 회사 부품을 장착 하였습니다.

이 장착 부품의 소모품 구매 시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시연을 위해 렌트한 차량에 장착하는 부품관련 소모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내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25% 경감됨

Q

저희 회사는 산업폐기물 소각 및 스텀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2017~2019년도 중에 2건의 공사(스팀배관(열수송관) 이설공사 / 교체 및 보강공사)에 대하여 이번에 관할관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는 통보가 와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 1)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재축, 이설, 대수선, 개보수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개보수 및 취득세 과세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2) 취득세 부과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경우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감면 적용율이 25% 인지 75%인지를 궁금합니다.
- 3) 취득세법상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과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일반적으로는 해당 공사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도 본공사를 위한 기초공사 및 복구공사는 포함된다고 판단되지만 조경공사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내의 대수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합니다.

3. 지방세법에서는 구체적 과세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1번에도 회신하였듯이 구체적 범위 등을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상적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Q

거래처에서 전월 말일자로 발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5일에 발행하였습니
다.

이 경우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혹시 해당 건에 대하여 마이너
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계해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에 의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
다.

귀사의 경우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함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
급하는 경우라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여야 함

Q

금형판매를 기준에 수익,비용 잡지 않고, 선급금, 선수금 처리후 상계처리 하였는데 향
후 매출과 비용으로 하여 매출인식하게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 부탁드립니다.

A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신규종목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따라서 귀사도 금형판매
를 실시하려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의 정관에 해당 사업의 업종이 있어야 하는데 귀사
의 경우 이미 금형판매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면 되며, 정관에
해당 업종이 없다면 정관변경후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후 신규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많은 기업들을 이익급감이나 부도·파산 등의 경영위기로 빠뜨리고, 해당 기업들의 채무변제능력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간에 채권·채무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채무조정 중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과 채무면제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무자 A는 차입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받기로 함.

차) 차입금	1,000	대) 토 지	700
자산처분손익	100		
채무조정이익	200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은 경우 동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권자 B는 대여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해주기로 함(B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

차) 토지	800	대) 대여금	1,000
대손충당금	100		
대손상각비	100		

채무면제 등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 · 채무조정

채무자는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채권 · 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채무면제에 따른 채무자의 회계처리

차) 차입금	1,000	대) 채무면제이익	1,000
--------	-------	-----------	-------

채권자는 채권 ·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 · 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그 차이금액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조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전체금액을 면제해주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조정 반영한다.

◇ 채무면제시 채권자의 회계처리(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충당금과 우선상계)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대여금	1,000
----------	-------	--------	-------

365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 세제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제혜택 제한 방안

해당자		가입 불가 상품
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2개)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내년 이후	ISA, 비과세종합저축, 공모 부동산펀드, 조합출자, 예탁금 등(9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현행	개정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19세 이상 거주자
자산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상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5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 이월 허용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현행	개정
국내복귀 방식	국내 사업장 신설 필요	기존 국내사업장 증설도 가능
해외 생산량	50% 감축 의무	폐지
세제지원 대상 소득	국내복귀 소득	해외 감축량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 설정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책

연금	세부내용
주택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연령 하향조정(60→55세)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 일부전세가구 가입허용, 배우자 자동승계 등(신탁방식 도입) 가입주택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활용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일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 기금형 제도 도입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개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A 개인연금 전환 허용 50세 이상 소득공제 한도 연 200만원 확대 (400만→600만원, 3년 한시) 일임형 제도 도입 연금상품 선택·이동 인프라 구축



시간관리의 핵심

일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해서 시간 활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시간관리 매트릭스' 기법이 있다.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신이 어느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어떤 영역에 더 신경 써야 할지도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A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로 시간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이다. 유의할 점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너무 많으면 업무의 과부하로 인하여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A 영역의 일들이 많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해야 하지' 하면서 일들을 뒤로 미룬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A영역의 일들을 B영역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

■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B영역은 독서, 운동, 인간관계 등과 같이 당장 실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일들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급한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C영역은 긴급할 뿐인데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속임수 영역이다. 뭔가 매일 바쁜데 지나고 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C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게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C영역은 일은 처리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자신의 목표나 비전과는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위임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D영역은 SNS 확인, TV시청, 게임, 작은 이메일 확인 등과 같이 낭비의 영역에 해당한다. 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D영역은 일은 가급적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버는 길이다.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활용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개념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지만,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자신의 목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언제나 실천은 본인의 몫이다.

최신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부가세 면세인 포장김치운반을 위한 비닐파우치도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제 됨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2281, 2019.12.26

질의

- 운반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밀림 형태(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질의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세액 계산방법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소득-687, 2019.12.31

질의

- 경기도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을 모집하여수거활동 및 실적에 따라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수거보상비는 기본급 월 10만원, 성과급 월 15만원으로 최대 월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됨
 - 해당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 업무 위탁하여 운영함
- 경기도가 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대한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보상금으로서 비과세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

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183, 2020.02.28

■ 질의

- 선교사들의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05.26), 재산세과-852(2010.11.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재

과-368(2016.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05.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일정금액의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250만원 까진 비과세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세우고 주식거래 등에 붙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벌어들인 수익에 20%를 기타소득세로 매기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골자다.

연간 벌어들인 손익을 통산한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 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에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납세협력비용, 과세실의 및 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감안해 기존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내년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규정이 담겼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데 가령,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3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신고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이로서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 불균형 완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추진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세수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해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자체는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폐업 임대사업자, 1년내 집 팔면 '양도세 중과' 제외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씩 중과된다.

이번 보완조치에 따라 자진·자동등록 말소된 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켰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 추과과세(세율 10%포인트↑)도 없다. 다만, 자진폐업 팬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해야만 중과세가 없다.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 행정안전부, 2020. 8

1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1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①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연장하는 이유?

-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영농승계 및 안정적 영농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고려할 때,
- 현행 수준(취득세 50%) 감면 연장 필요

②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농업법인은 영세농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감면 연장 필요

③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어업법인은 영세어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을 통해 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감면 연장 필요

2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20년 코로나 여파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어, 경영 유지 및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 인정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대비 자금 확보 여력이 부족하여 기업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음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 지속

② '창업'의 개념을 정비하는 이유는?

- 現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의 개념을 준용하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두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창업'의 범위가 상충됨
- 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개념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여 법 해석 편의 제고
※ 「조세특례제한법」도 '창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음

③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정비하는 이유는?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상이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과 달라 납세자 불편 초래
 - 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 상 '대분류' 기준으로 통일성 있게 일원화 하여 세정 운영 상 편의를 제고하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제 사업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방제 서비스업 등 신규 업종*을 일부 추가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였음
- * 방제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3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농업인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한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중앙회 경제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제공 기여, 지역 조합은 농어업인 사업 등 실질적 지원 효과 고려

②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영세상인 및 서민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 편의 등을 제공함으로

- 써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원 지속 필요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① 5G 무선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5G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필요성 인정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이유는?

- 이동통신 3사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등에 집중적으로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지원 필요
* 수도권의 5G 무선국은 44,009개로, 전체(87,455개)의 50.3% 수준('19년 기준)

③ 모든 5G 무선국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 지방세 지원 취지가 5G 조기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 법 개정 시행 이후 신규 구축한 무선국에 한하여 감면 적용

2 R&D 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① R&D 관련 차량에 대한 취득세 규정 명확화로 인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허가된 연구용 차량 수('19년, 6,467대)는 매년 차량에 부과되는 취득세 과세건수('19년, 약 4백만건) 대비 미미한 수준(0.16%)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실험·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R&D 관련 미등록차량 매입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율주행·전기차 등에 대한 실험 및 연구가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 기대



3 공공직업훈련시설 감면 신설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지원 필요성 인정
※ 유사 성격의 평생교육시설 감면의 일몰기한이 '21년임을 고려, 일몰기한 일치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시설 관련 감면 연장

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육성,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제공하는 등 아동복지서비스 수행
-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

②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청소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청소년 복지향상과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공공영역으로 지원 축소 시 청소년 활동 위축 우려
* 한국청소년연맹, 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지역주민 고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고려, 현행 감면 연장

2 노인복지시설 감면 지원 연장

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독거·치매 노인 등에 대한 보호·치료시설 수요 증가, 노인복지시설 세제 지원으로 노인 안정망 기능 강화할 필요

3 국가유공자 생계 안정을 위한 감면 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체 부상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고려, 현행 세제지원 연장 필요
-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훈단체 재활치료 사업 목적 부동산, 자활용사촌 내 중상이자 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동산 등

4 조세징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고액·상습체납자 감지요청 제도 도입

①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인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감치기준이 1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였음
-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상 감치 제도의 경우 체납 국세의 기준금액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② 감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① 감치 신청 전 소명기회 부여, ②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③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를 개정안에 포함하였음.
- 또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짐

③ 법인도 감치 적용 대상인지?

-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치 대상이 아니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 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자 제도가 없어 법인에 대한 감치는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치 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전국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제재 근거 마련

① 전국 합산 시 추가로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 전국 합산 시에만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명단공개(1천만원) 1,953명, 출국금지(3천만원) 622명, 신용정보 제공(5백만원) 4,879명 ('20.6.기준)
 - 이들은 지자체별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현행 지자체별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가 미 적용 중

②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 현황은?

* (요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

- '19년 고액 · 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9,067명(개인 6,744, 법인 2,323)
※ (기준 공개자 규모) 63,533명(개인 48,318명, 법인 15,215개)

③ 전국 합산 시 제재기준을 상향해야 하지 않는지?

- 체납자 간 형평성을 위하여 현재 제재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전국 합산 제재는 일정 기준*(예 : 1천만원) 이상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자체별 제재에 따라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 명단공개(1천만원 ↑), 출국금지(3천만원 ↑), 신용정보 제공(5백만원 ↑)
- 합산 제재 시 제재기준을 상향할 경우 고액체납 징수 강화라는 목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3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

①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미 압류시 사실상 소재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의 사각(死

角) 발생

-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입국 및 통관 시 고가의 휴대품 등 수입품에 대해 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세는 '17년부터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의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실시 중 ('국세징수법' '16.12.2. 개정, '관세법' '16.12.2. 개정)

②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임
 - *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2,600명(개인 55,062, 법인 17,538) 명단공개 중
- ('19년 신규 공개현황) 9,067명(개인 6,744명, 법인 2,323개)

③ 체납처분 위탁 범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데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① 입국 시 휴대품, ②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③ 일반 수입품(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 포함됨

4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종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①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는 종종에 연대납세의무나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 지방세관계법 상 납세의무의 확장에는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체납처분 순서 및 목적물에서 차이

구 분	체납처분 순서 및 목적물
연대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체납처분이 용이한 순서대로 체납처분
제2차 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 전체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전체
물적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 전체 → 양도담보된 재산

-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유사하고, 형식적인 권리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 등을 고려

* 실권리자는 원래 납세의무자(신탁자(종종), 양도인), 형식적 권리자는 제3자(수탁자, 양도담보권자)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 가능
 - ※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
-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6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①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두는 이유는?

-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인식하고 부담한 차액이 당초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
 - 재고차익이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세율 인상 前에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반출한 재고담배를 세율 인상 後에 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율 차이만큼의 불로이득
 - *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담배 제조자 등이 세율 인상 전 이미 세금 납부한 재고담배를 세율 인상 후에 판매하여 차액만큼의 이득 추취
 -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인식하고 납부한 차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과세 근거 필요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①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법인세법 § 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①세액공제방식과 ②손금산입방식 선택 가능
- ①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후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ext{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②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공제의 형식)

〈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방식 〉		
외국 지점	법인세(국내 본점)	법인지방소득세
소득 100	당기순이익 75	법인세과세표준 100
세율 25%	손금불산입 25	과세표준 차감액 25
세액 <u>25</u>	과세표준 100	법인지방소득세 75
	법인세율 20%	과세표준
	산출세액 20	법인지방소득세율 2%
	세액공제 -20	산출세액 1.5
	납부세액 0	

- ②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지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
- 현재 판례가 부당하다고 보는 '세금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③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면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이때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에 참여하면 법인세 이월액을 지방소득세가 공제하고, 또다시 이월액을 법인세가 공제하는 절차가 5년간 지속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임

<예시> x1 ~ x5년 귀속분 까지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x1년의 법인세가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의 경정 순서

☞ x1년 국세 경정(국세청) → x1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 x2년 국세 경정(국세청) → ... → x4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 x5년 국세 경정(국세청) → x5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④ 법인세와 과세표준이 달라질 경우 실무상 운영 등 문제점은 없는지?

- 원칙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차감하는 것으로, 실무상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차감액을 15년간 이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법인세와 별개의 서식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① 이륜자동차 세율 개선이 실질적 증세가 아닌지?

- 이륜자동차 세율은 '91년 현행 단일세율 체계로 규정되었으나,
 - 200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99년), 미국 이륜차 공식 수입업체 등록 등으로 고가·고성능 이륜자동차 보급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
 - *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이에,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체계 개선하려는 것임

② 세율 구간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비교해 차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차이를 고려하였으며,
 - 배기량 1,000cc인 경차가 부담하는 최저 자동차세(52,000원) 등을 감안하여 최고세율 구간을 설정하였음

〈 비영업용 3륜 이하 자동차세 〉

현행		개정(안)	
배기량	세액	배기량	세액
125cc 초과		125cc 초과 260cc 이하	18,000원
18,000원		260cc 초과 1,000cc 이하	36,000원
		1,000cc 초과	54,000원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3단계)

3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 제고 목적
 - 판매가격(4,500원) 기준 제세부담금* 비교시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담배(궐련, 1갑)의 56%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문제 제기
 - *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개별소비세, 부가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 이에,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 조정 방안 마련
 - *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공동 연구용역(지방세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현 행

개 정

니코틴 용액1ml당 628원*

* 1.6ml당 1,007원

※ 궐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니코틴 용액1ml당 1,256원*

* 0.8ml당 1,007원

② 세율 조정의 근거는?

- 연구용역 내용 등을 토대로 궐련 1갑과 흡연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조정
 - 궐련 1갑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약 0.8ml와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

6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①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 현행 주민세는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며, 납세자는 주민세를 세세목별로 여러 번 납부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복잡한 주민세 체계에 대해 납세자 문의가 빈번하고, 언론·학계의 지적 및 자치단체의 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명료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 편의성을 증진

②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진 않는지?

- 세수증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오히려 자치단체의 세수가 일부 감소 예상(총 69억)

2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일원화 등

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이유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중첩되는 제재로 오해될 수 있어, 가산금을 폐지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 하는 것임

3 법인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은 법인의 분할 등으로 분할되는 재산 비율과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없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불합리
- 법인의 분할 등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리화

7 국세 개정안 반영

1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① 개인지방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

과세기간		~'14	'14~'16	'17	'18~	개정안
과표 구간	1,200만 원 이하	소득세액의 10%	0.6%	0.6%	0.6%	0.6%
	1,200 ~ 4,600만 원		1.5%	1.5%	1.5%	1.5%
	4,600 ~ 8,800만 원		2.4%	2.4%	2.4%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3.5%	3.5%	3.5%
	1.5 ~ 3억 원			3.8%	3.8%	3.8%
	3 ~ 5억 원			3.8%	4.0% (+0.2%p)	4.0%
	5 ~ 10억 원			3.8%	4.0% (+0.2%p)	4.2%
	10억 원 초과			3.8%	4.0% (+0.2%p)	4.5% (+0.3%p)

② 최고세율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 (적용대상자) 약 1.6만 명('18년 귀속 기준)
 - 균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약 1.1만 명(상위 0.05%),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약 0.5만명
 - (세부담 사례)
 -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는 세부담이 6,600만원 증가
(소득세 6천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6백만원)
- ※ (현행) 13억 4,706억 원(소득세 12억 2,460만 원 + 지방소득세 1억 2,246만원)
 → (개정안) 14억 1,306억 원(소득세 12억 8,460만 원 + 지방소득세 1억 2,846만원)

2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① 소득세, 법인세의 신탁소득 관련 개정내용 및 취지

- (소득 · 법인세) 신탁의 종류 ·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 방지

유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식
수익자 과세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 과세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 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등	소득원천별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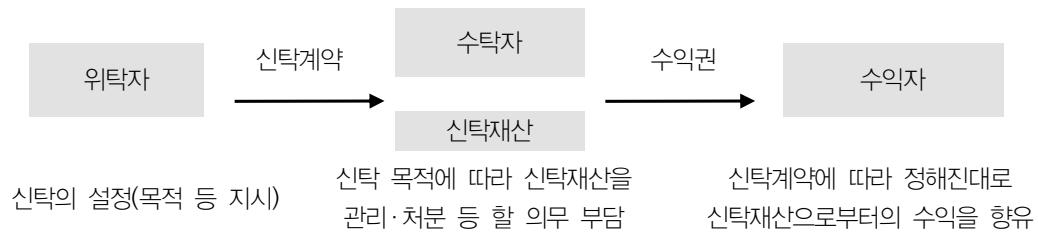
신탁재산 법인세 과 세	1단계: 수탁자 2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 (위탁자가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2단계 과세 1)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배당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
-----------------------------	--------------------------------------	---	--

② 국세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정 방안은?

-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수탁자에 대해 1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부과
 - 공동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2차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성격의 조항 등을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준용할 필요가 있음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연도 기간 설정,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절차 등 기본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신설할 필요

참고 - 신탁제도 개요

□ 신탁의 개념, 의의 및 유형



- (개념)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 2)
 - (의의) 소유권을 위탁자로부터 분리시킴으로서 해당 재산을 위탁자의 도산 등 위험에서 격리하고, 수탁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산과 관련한 사업 등에 제3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
- ※ 경제적 이익(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귀속)과 법적 소유권(수탁자에 귀속)이 분리

< 신탁법 개정('11년)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신탁 유형 예시 >

- (유언대용신탁) '위탁자의 사망시'에 미리 지정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생전에 수익자 변경 가능
 - ※ 신탁계약을 명확히 설정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단독행위인 유언에 비해 계약내용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 예방 가능
-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신탁으로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함
 - * ① 수익권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 ② 기명식 · 무기명식 발행가능,
 - ③ 수익자 명부 작성, ④ 수익증권 양도 · 질권 설정 가능
- (유한책임신탁)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지도록 한 신탁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함
 - * ① 유한책임신탁등기, ②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등 작성 의무,
 - ③ 외부감사 의무, ④ 신탁사채 발행가능
- (목적신탁) 수익자가 없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한 신탁
- (자기신탁) 위탁자가 특정재산에 대해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설정하는 신탁

3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①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 신탁 수익권은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신탁법」에서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참고 - 신탁 수익권

- 신탁 수익권 개요
- (개념)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자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로서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유형, 지급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
- (성격)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신탁법」에 의해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됨
 - ※ 「신탁법」§ 64조(수익권의 양도성)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신탁 수익권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 단, 1)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이거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0, §189)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25%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 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데 신탁수익권은 기준시가에 따름
 - (기준시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
 - * 「상증법」§65조 조건부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4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① 가상자산 과세 이유

- (과세정상화)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고,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
- (소득간 형평)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

②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월)

* IFRS Interpretation Committee: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

참고 1 - 가상자산 개념 등

- 가상자산(소득)의 정의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의 성격: 무형자산
 -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결정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가상자산 보유시 회계처리에 대한 결정('19.6.12.)
 -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
 - 가치변동위험, 계약상 권리 부존재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 정부 입장과 유사
-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성을 인정함(2018도3619)
 -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
 -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2011두30281) 하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2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국세 개정안)

-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 (과세 최저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 * (예)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
 - (세율) 20%
 - 납세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가상자산 양도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 ·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
 -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
 - (비과세)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가능

〈 가상자산 과세를 '21.10.1.이후 시행하는 이유〉

-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결정
※ 「특정금융정보법」은 '21.3.25일 시행 예정, 그로부터 6개월 후(9.25.) 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 모바일앱 이용 가능

- 행정안전부, 2020. 8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자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다.

- 특히,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 날은 납부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봄비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 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 주민세(균등분) 개요

- 개인 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미성년자, ③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④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 (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개인사업자 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납세의무 제외: ① 담배소매인, ② 연탄·양곡소매인, ③ 노점상인, ④ 유치원 경영자
 - (세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법인 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 수	표준세율		탄력세율
	100명 이하	100명 초과	
100억원 초과	20만원	50만원	자치단체가 조례로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만원	표준세율의 5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20만원	범위 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만원	10만원	가감조정 가능
그 밖의 법인		5만원	

- (징수 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정 수
-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참고 2 - 주민세 균등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누리집

- ①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납부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 ② 납세의무자납기일 등 정보 입력 → 조회 → 납부하기

□ 스마트 위택스

- ① 구글플레이 / Appstore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다운로드 → 우측 상단 메뉴(三) 선택
- ②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

□ 카카오페이

- ①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청구서 선택
- ② 내 청구서 → 지방세/수도요금 → 신청 → 납부

□ 네이버페이

- ① 내 지갑 → 메뉴 하단의 고지/납부 선택
- ② 지방세입 신청 → 납부

□ 페이코

- ① 하단 메뉴 중 더보기 → 전자문서함
- ② 지방세입 신청 → 납부

올해 8월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국세청, 2020. 8

- (납부대상)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을 8. 31.까지 연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 참고로,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8. 31.(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 ▶ [납부서 출력]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2 신고내역 → '신고 일자 입력' 후 조회 → [납부서 출력]
- ▶ [전자납부]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세정지원)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가능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0. 8

【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요약 】

- ◆ (분석 결과) 상장법인에 대한 '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15년 대비 2.2%p↓)
 - * 적정비율 : '15년 99.4% →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비적정의견 회사 수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대형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감사한 회사 비율*(상장법인)은 꾸준히 감소('15년 대비 12.3%p↓)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 '15년 50.5% → '16년 47.3% → '17년 44.7% → '18년 42.7% → '19년 38.2%
 -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 감사수임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 (시사점)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 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 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 대형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 가 이루어져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I

개요

- (분석대상) '19회계연도 상장법인 2,301*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18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71사 증가
 - * '20.3월말 주권상장법인 2,358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57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379사(59.9%)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

II

분석결과

1 감사의견 현황

- ◆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 (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의견 7사+의견거절 58사)
 - 이는 新외감법 개정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
- (적정의견: 2,236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236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 (98.1%) 대비 하락(0.9%p ↓)
 -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15회계연도(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15년 대비 2.2%p ↓)
- (비적정의견: 65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 7사, 의견거절 58사)로 전기(43사) 보다 22사 증가
 - 한정의견은 7사로 전기(8사)보다 1사 감소하였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35사)보다 23사 증가
 - 특히 '19년 의견거절 기업(58사)은 '15회계연도 대비 48사 증가(10사 → 58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2사), 계속기업 불확실성(42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단위: 사, %)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정(비율)	1,990 (99.4)	2,060 (99.0)	2,123 (98.5)	2,187 (98.1)	2,236 (97.2)
비적정	12	21	32	43	65
합 계	2,002	2,081	2,155	2,230	2,301

- (시장별 분포) 시장 유형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9.1%), 코스닥(96.4%), 코넥스(93.9%) 시장 순으로 나타났음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p)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증감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적정(비율)	763 (99.2)	1,280 (97.6)	144 (96.0)	2,187	98.1	768 (99.1)	1,330 (96.4)	138 (93.9)	2,236	97.2	49	△0.9
비적정	6	31	6	43	1.9	7	49	9	65	2.8	22	0.9
한정 의견 거절	2	5	1	8	0.4	-	6	1	7	0.3	△1	△0.1
의견 거절	4	26	5	35	1.5	7	43	8	58	2.5	23	1.0
합 계	769	1,311	150	2,230	100.0	775	1,379	147	2,301	100.0	71	

- (감사계약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83.0%)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8.1%)보다 현저히 낮으며, '17회계연도 이후 그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

* 감독당국은 상장예정, 관리종목 편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

- 이는 지정 기업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진데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정	기업	147	183	171	232	141
	적정비율	95.9	95.1	92.4	89.2	83.0
자유수임	기업	1,855	1,898	1,984	1,998	2,160
	적정비율	99.6	99.4	99.0	99.1	98.1

-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4.3%로 가장 낮음



-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분	1천억 미만		1천억 ~5천억		5천억~2조		2조 이상		합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적정	879	94.3	943	98.7	246	100	168	100	2,236	97.2
한정	5	0.5	2	0.2	-	-	-	-	7	0.3
의견 거절	48	5.2	10	1.0	-	-	-	-	58	2.5
합계	932	100	955	100	246	100	168	100	2,301	100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이나,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17년 550건 → '18년 486건 → '19년 356건)
 -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이전*되어 기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기재 내역을 함께 체크하고 참고할 필요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단위 : 건, 사)

항목별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증감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54	121	△33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131	66	△65
회계 변경	117	50	△67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34	42	8
기타	50	77	27
강조사항 합계	486건	356건	△130
기재기업 수	294사	308사	△14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236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총 84사(3.8%)로 전기(85사, 3.9%)와 비슷한 수준
- '18회계연도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1년 이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

3 감사인 분포

- ◆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4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15회계연도(50.5%)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15년 대비 12.3%p ↓)
- 다만,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의 감사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18년 80.1% → '19년 82.9%)하였으며,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 (4대 회계법인* 집중도)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하여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
 - * 소속 공인회계사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로 글로벌 4대 회계법인 (PwC, KPMG, EY, DTT)과 제휴관계를 맺은 국내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p에 이른
 - * 상장법인 수는 최근 5년간 299사 증가하였으나, 4대 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수는 133사 감소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회사 수와 점유율〉

(단위: 사, %, %p)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4대 회계법인	1,012	984	963	953	879
분석대상	2,002	2,081	2,155	2,230	2,301
비율 (증감)	50.5 (↓ 2.9)	47.3 (↓ 3.2)	44.7 (↓ 2.6)	42.7 (↓ 2.0)	38.2 (↓ 4.5)

- 4대 회계법인은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62.6%)을 유지한 반면, 코스닥(26.7%), 코넥스(17.7%) 시장은 낮음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

(단위: 사, %, %p)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증감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4대 회계법인 (비중)	504 (65.5)	420 (32.0)	29 (19.3)	953	42.7	485 (62.6)	368 (26.7)	26 (17.7)	879	38.2	△74	△4.5
기타 회계법인 (비중)	265 (34.5)	891 (68.0)	121 (80.7)	1,277	57.3	290 (37.4)	1,011 (73.3)	121 (82.3)	1,422	61.8	145	4.5
합 계	769	1,311	150	2,230		775	1,379	147	2,301		71	

- (시가총액별 점유율)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1,649조원으로 전기(1,600조원) 대비 49조원(3.0%) 증가하였으며,
 -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447조원(87.8%)으로 전체 상장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88.1%) 대비 0.3%p 감소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 기준 감사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90% 수준으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과 점유율〉

(단위: 조원, %, %p)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4대회계법인	1,246	1394	1,644	1,409	1,447
분석대상	1,393	1,542	1,842	1,600	1,649
비 율(증감)	89.4(↓ 1.5)	90.4(↑ 1.0)	89.2(↓ 1.2)	88.1(↓ 1.1)	87.8(↓ 0.3)

- (자산규모별 점유율)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상장 법인 비중은 각각 95.8%, 74.0%로 전기(93.3%, 71.0%) 대비 2.5%p, 3.0%p 증가
 - 반면,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및 1천억원 이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및 19.1%로 전년(39.1%, 23.2%) 대비 1.6%p, 4.1%p 감소되어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자산규모별 4대 회계법인 및 기타 회계법인 감사 비중〉

(단위: 사, %)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4대법인		기타법인		합 계		4대법인		기타법인		합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조 이상	196	93.3	14	6.7	210	100	161	95.8	7	4.2	168	100
5천억~2조	218	71.0	89	29.0	307	100	182	74.0	64	26.0	246	100
1천억~5천억	348	39.1	542	60.9	890	100	358	37.5	597	62.5	955	100
1천억 미만	191	23.2	632	76.8	823	100	178	19.1	754	80.9	932	100
합 계	953		1,277		2,230		879		1,422		2,301	

III 시사점

①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향후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② 4대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 완화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 '15년 1,012사 → '16년 984사→ '17년 963사→ '18년 953사→ '19년 879사
 -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법인 감사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대형 상장법인은 대형 회계법인(4대 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감사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③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항에 대한 유의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의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 * '15년 77사 → '16년 81사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 하더라도 재무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비, 1년 이내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

④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한 불확실성 기재 기업 증가 예상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년에도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이전 기재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영업환경 risk 등을 체크하고 유의할 필요

붙임 1 - 감사보고서의 개요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기업·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K-IFRS 적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제출대상	제출기한
기업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 감법 § 23)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	
□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 1)	○ 2)	○ 3) ○ 4)	

주)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❶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 ❷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 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 ❸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 ❹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별도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붙임2 - 참고 통계자료

1

감사대상법인

가. 시장별 분포

(단위: 사)

회계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가증권	736	741	758	769	775
코스닥	1,153	1,199	1,249	1,311	1,379
코넥스	113	141	148	150	147
합계	2,002	2,081	2,155	2,230	2,301

나. 결산월별 분포

(단위: 사, %)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12월 (비율)	1,958 (97.8)	2,039 (98.0)	2,116 (98.2)	2,191 (98.3)	2,260 (98.2)
3월	23	21	19	20	20
6월	13	13	12	11	13
기타	8	8	8	8	8
합계	2,002	2,081	2,155	2,230	2,301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단위: 사, %)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결 (비율)	1,423 (71.1)	1,517 (72.9)	1,610 (74.7)	1,684 (75.5)	1,758 (76.4)
개별	579	564	545	546	543
합계	2,002	2,081	2,155	2,230	2,301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정	1,990	2,060	2,123	2,187	2,236
한정	2	11	7	8	7
부적정	-	-	-	-	-
의견거절	10	10	25	35	58
합계	2,002	2,081	2,155	2,230	2,301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정	비적정								
유가증권	734	2	738	3	754	4	763	6	768	7
코스닥	1,143	10	1,184	15	1,228	21	1,280	31	1,330	49
코넥스	113	-	138	3	141	7	144	6	138	9
합계	1,990	12	2,060	21	2,123	32	2,187	43	2,236	65

다. 감사수임 방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정	비적정								
자유수임	1,849	6	1,886	12	1,965	19	1,980	18	2,119	41
감사인지정	141	6	174	9	158	13	207	25	117	24
합계	1,990	12	2,060	21	2,123	32	2,187	43	2,236	65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정	비적정								
2조 이상	181	-	190	1	200	-	209	1	168	-
5천억 ~ 2조	276	-	273	-	297	2	307	-	246	-
1천억 ~ 5천억	714	2	770	5	819	11	874	16	943	12
1천억 미만	819	10	827	14	807	19	797	26	879	53
합계	1,990	12	2,060	20*	2,123	32	2,187	43	2,236	65

* 1개사는 재무제표가 미첨부 되어 현황통계에서 제외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4일(금)	8월 18일(화)	8월 19일(수)	8월 20일(목)
미 달 러 (USD)	1183.60	1185.80	1185.10	1182.30
일 본 엔 (JPY)	1106.48	1118.42	1124.44	1115.11
영 국 파 운 드 (GBP)	1546.85	1553.99	1569.43	1550.23
캐 나 다 달 러 (CAD)	895.31	896.80	900.33	894.87
홍 콩 달 러 (HKD)	152.72	153.00	152.91	152.55
위 안 화 (CNH)	170.66	170.76	171.10	171.10
유 로 화 (EUR)	1398.60	1408.26	1414.54	1400.97
호 주 달 러 (AUD)	846.16	855.61	858.43	849.54
싱 가 풀 달 러 (SGD)	862.05	866.65	868.62	863.02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2.31	282.87	283.35	283.36